

□ 지역인재

- 충청권(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)에 소재한 대학교(학사)(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, 고등학교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1. 충청권에 소재한 학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충청권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- * 충청권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충청권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지역인재에 해당
- (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2.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경우

- (1)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 - ①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공군사관학교(충북)
 - ②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(2)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- (3)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(4)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(5)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(6)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(7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(8) 타 지역 소재 대학(학사) 졸업 후 지역인재 해당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

< 예 시 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- 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